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6 (목)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6. 11. 21(화)
- 다. 상정일자 : 2006. 12. 5(화)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 5)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연장 승인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직급별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제2항 개정)
 - 복식부기의 직급별 정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 기한을 당초 2006. 12. 31에서 2008. 12. 31까지 2년 연장.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조례안은

복식부기 운영을 위하여 2006. 12. 31일까지 승인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려는 것으로

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답변 내용
○ 복식부기 정원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	○ 현재 일반회계와 복식부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회계는 복식부기로 운영되어야 하나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 이에 분석한 결과 정착을 위하여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 우리 평창군이 지난 6월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부칙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단서규정인 "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 2006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6년 12월 5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가. 우리 평창군이 지난 6월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부칙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단서규정인 "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 2006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나. 이에 조문을 적법하게 수정하기 위함임

2. 수정주요골자

- 가. 안 부칙 제2조제2항의 "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 2006년 6월 23일까지"를 삭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6년 12월 5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제2항의 "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 2006년 6월 23일까지"를 삭제

수정안 대비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
------	----

제출년월일 : 2006. 11. 2.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직급별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제2항 개정)
 - ▶ 복식부기의 직급별 정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6. 12. 31에서 2008. 12. 31까지 2년 연장

3. 참고사항

- 가. 가. 관련법령 : 별첨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관계부서승인 : 강원도 총무과 - 21747(2006.10.20)
- 마.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생략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78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2항 중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복식부기 3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복식부기 3명)은 2008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